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3.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주)금호가 마권 장외발매소를 위해 시 시교통기획과 교통영향평가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편익시설물 관람시설), 건축과는 건축물 용도변경 편익시설을 관람시설로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1999년 5월 6일 최종심의필증이 금호산업에 송달되었고 서구청에서는 5월 11일 도착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00,710㎡(30.465평), 건축연면적 111,672.09㎡(33.780평), 당초 변경 전 97,964.69㎡(29,634평)에서 13,707.4㎡(4,146평) 증가된 용도변경 면적 7,421.69㎡(2,245평)으로 업무·운수시설을 관람집회시설로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수요도 당초 주차면수 1,047면(터미널 부설주차장 211대+신세계백화점 부설주차장 836대)에서 387면(터미널 222면+백화점 측 165면)증가할 뿐입니다.

4. 서구청 행정 전 부분의 새로운 개혁과 의식전환을 촉구

1) 예산운용의 문제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제2항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는 당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조정세)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액과 정산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서구청은 조정세 97년 5540억, 98년 530억임에도 45~50% 정도만 조세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97년 26억 3,500만원 중 집행액 18억 9,000만원, 이월액과 불용액을 포함, 잔액이 7억 4,000만원이며, 98년 23억 8,400만원 중 집행액 17억 600만원 잔액이 6억 7,700만원입니다.

동 조례 제11조 근거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에 구청장은 산정 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30일 이내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적기준인 70%가 훨씬 미치지 못하는 45% 내외만 교부받는 것은 구청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징수한 징수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 비율이 교부해야 합니다. 광주시 재원조정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풍암지구 현장민원실, 99년 S/W구입, 예산편성 시 S/W업그레이드 비용은 PC구입비의 25% 이상 별도 책정을 요구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협조에도 예산부서는 전혀 대비치 않아 S/W복제품을 정품으로 교환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의 부분별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원칙이 없는 심각한 예산운용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